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4. 24
제 안 자 : 박종갑 의원외

□ 수정이유

조례의 용어 중 외래어 약자를 한글로 공식명칭을 표기함으로써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함.

□ 수정주요내용

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“ISO인증을”를
“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규격 인증을”으로 한다.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“ISO인증을“를
”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규격 인증을“으로 한다.

□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2.제4조 제3호의 ‘으뜸기업’ 은 ISO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5개 업체 이내	제8조(선정 및 지정 등) 2.----------국제 표준화기구(ISO)의 규격 인증을 ----------